

#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46호

나.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26명

다. 제안일자 : 2023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2.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  
록 규정함(안 제8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발의됨.

### 나. 중앙정부 등 주관 공모사업 및 서울시의 수행 현황

- 국고보조금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sup>1)</sup>은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sup>2)</sup>(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제14조에서는 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공모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2019년

1)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5,969건에서 2023년 12월 현재 4,786건으로 최근 5년간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최근 5년간 중앙정부 공모사업 현황 >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모사업 수(개)*	5,969	5,226	4,846	4,818	4,786

자료: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opn.gosims.go.kr/>)

\* 중앙정부 자체 공모사업 외에 산하 기관 등을 통한 공모사업 건수 포함

### < 2023년 중앙정부 공모사업 세부 현황 >

번호	중앙부처	공모사업수*	비중(단위:%)
1	고용노동부	235	4.9
2	공정거래위원회	1	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1.8
4	교육부	37	0.8
5	국가보훈부	88	1.8
6	국가인권위원회	1	0
7	국민권익위원회	1	0
8	국토교통부	139	2.9
9	금융위원회	16	0.3
10	기획재정부	110	2.3
11	농림축산식품부	434	9.1
12	농촌진흥청	867	18.1
13	문화재청	59	1.2
14	문화체육관광부	1085	22.7
15	방송통신위원회	1	0
16	방위사업청	4	0.1
17	법무부	1	0
18	보건복지부	356	7.4
19	산림청	231	4.8
20	산업통상자원부	310	6.5
21	식품의약품안전처	44	0.9
22	여성가족부	105	2.2
23	재외동포청	2	0
24	중소벤처기업부	123	2.6
25	질병관리청	10	0.2
26	통일부	4	0.1
27	특허청	2	0
28	해양경찰청	4	0.1
29	해양수산부	143	3
30	행정안전부	126	2.6
31	환경부	161	3.4

자료: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opn.gosims.go.kr/>)

\* 중앙정부 자체 공모사업 외에 산하 기관 등을 통한 공모사업 건수 포함

- 참고로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75건을 수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조 4,713억 2천 2백만원임(국비: 303,413백만원, 시비: 839,912백만원, 기타(구비·민간부담 등): 327,997백만원)[참고자료].

## 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공모사업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제1조	목적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2조	정의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의회 보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성과평가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포상

- 이러한 조문 구성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주 등 다른 시·도 조례의 입법 체계와 유사하며, 내용도 대동소이함.

#### < 다른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1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3. 4. 5. 제정·시행
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3. 11. 10. 제정·시행
3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3. 10. 4. 제정·시행
4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3. 5. 8. 제정·시행
5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2022. 4. 14. 제정·시행

< 다른 시·도 조례의 조문 구성 체계 >

부산	광주	세종	전북	경남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제3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제4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6조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 의회 보고	제6조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 포상
제8조 의회 보고	제8조 의회 보고		제8조 의회 보고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성과평가	제9조 포상		제9조 포상	
제10조 포상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의 기술 방법 중 직접 목적만을 나열하는 방식<sup>3)</sup>을 취하고 있으며,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자치조례의 목적 조항을 기술하는 방식은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 ▶ 목적을 명시한 후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 ▶직접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여기서 ‘유치(誘致)’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는 것’으로, 중앙정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서울시가 신청하여 선정되는 것의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판단됨.

###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공모사업’과 ‘담당부서’를 정의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할 기관 등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공모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국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으로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의 의미<sup>4)</sup>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외에 국회,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4)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022.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2023년에는 347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구분	계	공기업	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23년	347	32	13	19	55	11	44	260

- 2022년 기준 서울시가 수행한 총 75건의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 중 공공기관이 추진한 공모사업 2건<sup>5)</sup>과 단체가 추진한 공모사업 1건<sup>6)</sup> 외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임.

#### (4)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동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와 ‘책무’의 의미를 구분<sup>7)</sup>해서 사용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 한국과학관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

7) 법률 용어로서 ‘책무’와 ‘의무’는 자치법규의 수범자에 대한 구속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하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는 시장의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적정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계획 수립 시기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집행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문을 규정함에 있어 이러한 표현 양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u>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u>적극 노력</u>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u>국가 등의 공모사업</u> <u>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u> ----- ----- ----- <u>적극적으</u> <u>로</u> -----.

(5)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한 것임.

<p><b>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b></p> <p>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li> <li>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li> <li>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 국고보조금의 공모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서울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 ----- <u>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u> ----- 1. ~ 3. (조례안과 같음)

- 다만 서울시는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주관 부처나 기관별로 공모 시기·기준 등이 상이하여 변동성이 크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6)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시장에게 사전 검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사전 검토사항을 5가지(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로 구분하여 규정함.

<p><b>안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b></p> <p>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p> <p>1. 공모사업의 적법성</p> <p>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p>
--

-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 2. 사업 타당성
  -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 4. 재정협의
  -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 5.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이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와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비 매칭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는 주요 재정합의 사항으로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등의 경우,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사전 협의 제도를 시행 중임.

**< 주요사업 재정합의 사항 >**

- 市 재정 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의무화\* \* 2024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p.67
-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받도록 규정(강행)
- 이 재정합의는 사업계획 수립시 뿐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 예시)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시범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 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이에 서울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가 예산편성 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상기의 사전협의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이상 별도의 사전심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사전검토 사항이 동 규정을 통해 명문화되면, 조례상의 기준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안 제6조 중 본문의 내용상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 1. ~ 5. (조례안과 같음)

-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공모사업 유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담당부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시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황 조사를 하는 실정이므로 동 규정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동 조례안이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제안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제7조의 조 명 및 조문은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고보조금의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 시비 보조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p>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p> <p>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7조(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 등) ① -----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p> <p>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 공모사업 유치와 유치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p> <p>④ ----- 추진 상황-----.</p> <p>⑤ (조례안과 같음)</p>

(7) 의회 보고(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은 서울시가 신청하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국·시비 공모사업과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국·시비 공모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함.

<p><b>안 제8조(의회 보고)</b></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가 신청하는 시비 및 국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li> <li>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시비 및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 의회에 예산편성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 권한<sup>8)</sup>을 고려하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며<sup>9)</sup>, 사전 보고를 통해 국·시비 매칭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sup>10)</sup>

### < 2022년 수행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공모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	국비	시비	기타
1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5,805,000	3,483,000	1,393,200	928,800
2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573,619	2,282,123	988,372	1,303,124
3	행정안전부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534,978	2,068,770	1,733,104	1,733,104
4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100,000	1,470,000	630,000	
5	국토교통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안양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8,625,000	10,000,000	16,874,000	21,751,000
6	국토교통부	바이오시산업과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504,340,000	25,000,000	366,340,000	113,000,000
7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9,426,000	4,000,000	15,426,000	
8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97,431,000	3,199,000	94,232,000	
9	국토교통부	미래첨단교통과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17,000,000	6,800,000	10,200,000	-
10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국·시비보조)	68,577,000	10,400,000	31,533,000	26,644,000
11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지치구 주차환경 개선 지원(생활 SOC 국비 보조)	73,094,000	15,297,000	-	57,797,000
1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6,080,000	2,950,000	3,130,000	-
13	국토교통부	친환경건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7,995,180	116,000	4,389,919	3,489,261
14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건물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2,882,408	1,843,190	527,654	511,564
15	환경부	생활환경과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142,600,000	48,900,000	93,700,000	-
16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158,380	4,079,190	4,079,190	

8) 제47조제1항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142조(예산의 의결)

9) 법제처, 의견 23-0237.

10) 2022년 기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은 17개의 실·본부·국 대상으로 총 36건임(1조 4,543억 4천 1백만원).

1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5,853,222	631,000	1,040,000	4,182,222
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047,800	3,268,880	-	3,778,920
1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5,227,000	20,533,000	14,986,000	69,708,000
20	보건복지부	스마트건강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4,490,000	650,000	650,000	3,190,000
21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2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3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중랑구 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5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6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7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28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2,500,000	9,000,000	12,150,000	1,350,000
29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30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7,500,000	3,000,000	4,050,000	450,000
31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32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33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3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35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36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총 계				1,454,340,587	293,971,153	833,302,439	327,066,995

-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반기 업무보고(7월) 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전 추경예산 편성이 있거나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예산심의 회기 이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sup>11)</sup>.

11)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23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공모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안 편성·심의와 시기가 비슷하고 내용이 동일·중복되는 사안이므로 별도로 보고할 실익이 적고, 불필요한 절차가 가중된다는 의견임.

(8) 성과평가 및 포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안 제9조는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sup>12)</sup>에 따르면, 국·시비 보조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평가실적 결과에 따른 예산상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다만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당초 목표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해진 목표가 정확히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동 조문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안 제9조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sup>13)</sup>

1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13) 참고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음.

- 안 제10조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부서를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공모사업의 원활한 유체에 공로가 있는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임.

**안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9조<sup>14)</sup>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포상’이 아닌 ‘표창’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sup>15)</sup> 안 제10조의 제목도 이에 맞추어 ‘표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의견
제10조(포상) (생략)	제10조(표창) (조례안과 같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

14)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15)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부산, 광주, 전북, 경남)의 경우, ‘포상’ 조례가 시행 중임.

## 【참고자료】 2022년 서울시 공모사업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공모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공모조건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기타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33,540	16,770	16,770	-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150,000	75,000	37,500	37,500	구비
3	여성가족부	가족다문화담당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관 ○ 국비 50%, 지방비 50%	254,000	127,000	127,000	-	
4	행정안전부	가족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스마트 방법 안심거리 조성	국비 100%	300,000	300,000	-	-	
5	여성가족부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104,480	31,344	20,896	52,240	○ 용산가족센터 1개소 ○ 구비 52,240천원
6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중 사업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 등을 검토하여 선정	5,805,000	3,483,000	1,393,200	928,800	구비
7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이용보조)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중 사업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 등을 검토하여 선정	190,777	114,466	30,948	45,363	구비, 민간부담
8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중 시장 내 영업점포 중 30% 이상 사업참여 신청하고, 민간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중 선정	1,387,750	971,424	238,420	177,906	구비
9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담당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중 시장 내 영업점포 중 30% 이상 사업참여 신청하고, 민간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중 선정	4,573,619	2,282,123	988,372	1,303,124	구비, 민간부담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농업대학교 국고 50~70%(시설비 70%, 운영비50%) 지원	610,000	425,000	180,000	5,000	사업 선정되었으나, 학교측의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
11	고용노동부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 (자치단체) 사업 운영비 지원(1인당 80만원, 지방비 20% 매칭) ○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2~3개월) 이수시 20만원	1,200,000	1,000,000	200,000	-	은둔청년 지원 사업(450,000천원)은 시비 100%로 별도 추진
12	행정안전부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모든 시도 및 시군구	5,534,978	2,068,770	1,733,104	1,733,104	구비
13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청주체 : 광역자치단체 ·프로젝트 수 : 3개 이내 ·지원규모 : 총액기준 1년 50억 한도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수 : 5개 이내	2,100,000	1,470,000	630,000	-	
14	국토교통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국비 40% 시비 60%	48,625,000	10,000,000	16,874,000	21,751,000	기금 10억원, SH 202.71억원, 민간투자(고대) 4.8억원
15	국토교통부	바이오/시산업과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뉴딜 기금(도시계정)활용	504,340,000	25,000,000	366,340,000	113,000,000	공공기관 투자 87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뉴딜사업기금 260억원

16	보건복지부	안심돌봄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	13,000	13,000	-	-	
17	보건복지부	안심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자치체	390,000	195,000	117,000	78,000	국비:시비:구비(50:30:20)
1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국비 50%, 지방비 50%	1,142,000	571,000	571,000		
1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국비 50%, 지방비 50%	430,800	215,400	215,400		
20	고용노동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 국비50%, 지방비50%	436,470	220,020	216,450		
2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국비 4,000백만원 정액 지원	19,426,000	4,000,000	15,426,000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국비80%, 지방비20%	1,281,180	921,840	359,340		
23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국비 30%, 지방비 70%	97,431,000	3,199,000	94,232,000		버스정책과 68,128백만원, 지수 안전과 29,303백만원
24	국토교통부	미래첨단교통과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국비 40%, 지방비 60%	17,000,000	6,800,000	10,200,000		
25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국시비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68,577,000	10,400,000	31,533,000	26,644,000	기타재원 구비
26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자치구 주차환경 개선 지원(생활 SOC 국비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73,094,000	15,297,000	-	57,797,000	기타재원 구비
27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디지털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300,000	150,000	150,000		
28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국비 50%, 지방비 50%	6,080,000	2,950,000	3,130,000		
29	경찰청	교통운영과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국비 28%, 지방비 72%	1,654,100	464,100	1,190,000		
30	국토교통부	친환경건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7,995,180	116,000	4,389,919	3,489,261	구비
31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건물과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서울시 산하 노후 공공건물	350,000	96,000	254,000		
32	환경부	친환경건물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거주시설 등	580,000	290,000	151,000	139,000	구비
33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건물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저소득층 주거지, 복지시설 등	2,882,408	1,843,190	527,654	511,564	구비
34	환경부	생활환경과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142,600,000	48,900,000	93,700,000		
3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100,000	50,000	50,000		
36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목적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동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기준 18시 이후 운영, 전일제 근무 및 자격요건을 갖춘자(사서)	8,158,380	4,079,190	4,079,190		
37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구축	보조금과 지자체부담금 1:1 매칭	124,000	62,000	62,000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3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5개국 이상(국내 제외), 해외선수 20% 이상 참가 등 국제경기대회	5,853,222	631,000	1,040,000	4,182,222	기타재원 : 국제대회 주관단체 별 기타예산(자부담 등)의 합

3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서울 국제올림픽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개최	470,000	120,000	350,000		
4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 : 국비 30%, 지방비 70% 긴급안전 : 국비 50%, 지방비 50% 장애인 편의시설 : 국비 70%, 지방비 30%	7,047,800	3,268,880	-	3,778,920	자치구 41개 세부 사업 중 11개 사업 선정
4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비 30억~40억 정액 지원	105,227,000	20,533,000	14,986,000	69,708,000	자치구 4개 세부 사업 중 3개 선정, 선정 후 국비 다년도 분할 지원
42	보건복지부	스마트건강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189,336	94,668	47,334	47,334	구비 25%
43	보건복지부	스마트건강과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150,000	75,000	75,000	-	
44	보건복지부	스마트건강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시비) 50% · 전국시도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미설치 권역 우선선정)	4,490,000	650,000	650,000	3,190,000	공모기관 자부담
4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과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국비50%, 지방비50%	200,000	100,000	100,000	-	
4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35,000	17,500	17,500	-	계속사업
4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325,000	162,500	162,500	-	계속사업
48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광역형(국비:시비=50:50), 기초형(국비:시비:구비=50:20:30)	1,340,000	670,000	622,000	48,000	구비 48백만원
49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0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1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2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중랑구 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3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4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5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6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2,500,000	9,000,000	12,150,000	1,3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7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8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7,500,000	3,000,000	4,050,000	4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59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25,000,000	10,000,000	13,500,000	1,50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60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61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62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63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과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국비 40% 시비 54%, 구비 6%
64	국토교통부	토지관리과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국비 선교부, 지방비 확보	58,000	58,000	-	-	시비 2023년 342,986천원 확보
65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400,000	200,000	-	200,000	구비 200,000
66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 40%, 지방비 60%	12,500,000	5,000,000	6,750,000	750,000	구비
67	농림축산식품부	공원여가사업과	도시농업공간조성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지자체	503,000	251,500	202,000	49,500	구비
6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조경과	나눔숲-나눔길 조성(녹색자금지원사업)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대상지	1,000,000	600,000	400,000	-	
69	행정안전부	수변감성도시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지하수) 확충 및 유지관리	국비30%, 지방비 70%	65,000	19,500	45,500	-	
70	문화체육관광부	총무과	청계천 스마트 박물관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재공모 참여 (청계천박물관 미디어 아카이브실 구축)	200,000	100,000	100,000	-	2022.4.1. 공모 선정 후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022.12.13. 용역 계약. 사업기간을 연장, 사고이월하여 진행함(2023.5.31. 준공)
71	문화체육관광부	총무과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200,000	100,000	100,000	-	2022.2.16. 공모 선정 후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022.10.31. 용역 계약. 사업기간을 연장, 사고이월하여 진행함(2023.3.31. 준공)
72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울대공원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63,600	63,600	-	-	· 사업종료 후 국립수목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전액을 세입처리 함 /총사업비 개념이 없음
7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 활용 푸시알림 시범사업	국비 44%, 지방비 44%, 민간자부담 12%	450,000	200,000	200,000	50,000	시비 전액 현물출자
74	한국과학관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이동형 과학체험 전시물 제작(2022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전시콘텐츠 개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전국 등록 공·사립과학관	250,000	250,000	-	-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75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운영관리(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조팝나무속 식물 30종 300개체 수집 및 증식	50,000	50,000	-	-	· 사업종료 후 국립수목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전액을 세입처리 함/ 총사업비 개념이 없음
<b>총 계</b>					<b>1,471,321,620</b>	<b>303,412,785</b>	<b>839,911,997</b>	<b>327,996,838</b>	